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. 8. 8 선고 2017가단64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7. 7. 11

판 결 선고 2017. 8. 8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1992. 4. 2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원고는 1992. 4. 2.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전 165㎡ 및 그 지상단층주택에 관한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2. 4. 22. 접수 제5560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7호증, 을제1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도 그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시켰었다.

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관계로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는바,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2. 4. 2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,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기재가 없고, 별도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아니한 점, ② 약 25년 전에 이루어진 타인간의 매매계약 내용을 자세히 기억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,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, 지목 등에 비추어 비용 등의 문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(향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, 그 비용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보다 적게 들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),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, 약정서 작성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, 갑 제4,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

없다.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수현

별지